2016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: 기본(취급기관별)내역 [주택마련저축]

(조회기간 : 2016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김길동	750101-*****		

■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계좌번호	저축구분	저축명	가입일자	납입금액 계
주택마련저축회사1 (987-65-43***)	B85B9A2B7364	주택청약종합저축	공공심유인홍팡서	2010-12-28	6,000,000
합 계					6,000,000

- 1. 공제대상자: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,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(12.31.현재)가 본인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% ('14.12.31. 이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(120만원)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능)
- ※ '09.12.31.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외)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(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)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

-1-

- ※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 가능
- ※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
- 2. 공제한도 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
- 3. 재외국민,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

일련번호: 20161222-00910154

